

2006. 5.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이동수의원 (인)

의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이승우	이승우	
윤경삼	윤경삼	
박종우	박종우	
김성진	김성진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6
------	------

발의연월일 2006. 5.
발 의 자 : 이동수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자구(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조중 “제15조의2의”를 “제15조의3의”로 함.
- 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함.
- 제4조제1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함.
- 제4조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15조

붙임 1.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1부. 끝.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의2의”를 “제15조의3의”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이라”를 “의정활동비라”로 하고, “회기수당을”을 “의정활동비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회기수당의”를 “의정활동비의”로 한다.

제4조제2호중 “회기수당의”를 “의정활동비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15조의2의</u>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5조의3의</u>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희기수당</u>”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u>희기수당을</u> 말한다. 3. (생략)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의정활동비</u>라 ----- ----- <u>의정활동비를</u>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보상금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 연도 <u>희기수당의</u>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u>희기수당의</u>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생략) ② (생략) 	<p>제4조(보상금지급기준) ----- ----- 1. ----- ----- <u>의정활동비의</u> ----- 2. ----- ----- <u>의정활동비의</u>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8.31, 2003.7.18, 2005.8.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전문개정 1994.3.16]

제32조의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3·16]

대통령령 제19322호[2006. 2.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3(종전의 제15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자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한다.